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3월 29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재난총괄 기능 강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 등 민선8기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「안전총괄실」을 「재난안전관리실」로 개편 및 ‘재난상황관리과’(4급) 신설

- ‘재난상황관리과’(4급)를 신설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·접수체계 마련 및 ‘안전총괄과’ → ‘재난안전정책과’, ‘안전지원과’ → ‘재난안전예방과’로 재편

나.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핵심분야 기능 보강·재편

- 한강르네상스 2.0 핵심과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「한강사업본부」를 「미래한강본부」로 명칭 변경하고 ‘수상사업부’ 기능 강화
- 그 밖에 「아동복지법」 개정('20.10.)으로 아동학대조사 권한이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지자체(자치구)로 이관되어 ‘아동복지센터’의 소관사무 현행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해당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해당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:
협의완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(2) 입법예고('23. 3. 23. ~ 3. 27.) 결과: 총 1건(반영)

※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(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)
(기획경제전문위원회실-801(2023.3.27.)호)

기획조정실의 분장 규정 중 "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제8호)"을 삭제하는
개정안은 공공자산의 전략적 운용·개발, 시유재산 총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등을
고려해 **기획조정실에서 현재처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이 요구됨**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 (☎2133-6729)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안전총괄실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안전총괄실)”을 “(재난안전관리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(종전의 제1호) 중 “안전관리계획, 재난 예방·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”을 “재난”으로 한다.

1. 안전관리계획, 재난예방·복구대책 수립

제4장제3절의 제목 “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”를 “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”로 한다.

제60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”를 “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”로 한다.

제6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아동복지 상담전화 운영
3. 입소아동의 상담, 건강검진,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

제132조제6호 중 “제30조제4항”을 “같은 법 제30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타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안전총괄실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4호 중 “한강사업본부”를 “미래한강본부”로

같은 항 제7호 중 “안전총괄실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”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6항 중 “안전총괄실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”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별표1의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

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8호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안전총괄실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“안전총괄실”을 “재난안전관리실”로 한다.

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“생활환경과” 수임기관 중 “한강사업본부장”을 “미래한강본부장”으로 한다.

별표의 물순환안전국 표 주관부서란 중 “치수안전과” 수임기관 중 “한강사업본부장”을 “미래한강본부장”으로 한다.

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제1호 중 “한강사업본부장”을 “미래한강본부장”으로 한다.

별지제1호서식 중 “한강사업본부장 귀하”를 “미래한강본부장 귀하”로 한다.

⑮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한강사업본부장”을 “미래한강본부장”으로 한다.

⑯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 중 “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”를 “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”로, “한강사업본부장”을 “미래한강본부장”으로 한다.

⑰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중 “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”를 “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”로, “한강사업본부장”을 “미래한강본부장”으로 한다.

⑱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“한강사업본부”를 “미래한강본부”로 한다.

⑲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및제7호 중 “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”을 “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”을 “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”을 “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제1호 중 “한강사업본부장”을 “미래한강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6항 중 “한강사업본부”를 “미래한강본부”로 한다.

⑳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한강사업본부장”을 “미래한강본부장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실·본부·국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, 복지정책실, 도시교통실, 기후환경본부, 문화본부, 관광체육국, 평생교육국, 시민건강국, 행정국, 재무국, <u>안전총괄실</u>, 주택정책실, 도시계획국, 균형발전본부, 푸른도시여가국, 물순환안전국을 둔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실·본부·국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난안전관리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<u>안전총괄실</u>) <u>안전총괄실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1. <u>안전관리계획, 재난예방·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~ 8. (생략)</p>	<p>제15조(<u>재난안전관리실</u>) <u>재난안전관리실장</u>-----.</p> <p>1. <u>안전관리계획, 재난예방·복구대책 수립</u></p> <p>2. <u>재난</u> ----- --</p> <p>4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~ 9. (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</p>

제3절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

제60조(설치)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생활과 관광에 기여하는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발전시키며 비상사태시 시민과 물자의 긴급수송·도강을 위한 도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(이하 이 절에서 “본부”라 한다) 를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제69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운영
2. (생략)
3. 아동학대 행위자의 가정조사, 상담, 교육
4. ~ 8. (생략)

제132조(소관사무)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3절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

제60조(설치) ①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9조(소관사무) -----
-----.

1. 아동복지 상담전화 운영
2. (현행과 같음)
3. 입소아동의 상담, 건강검진,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
4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132조(소관사무) 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
서울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
한 경찰청장과의 협의, 제30조
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
보

7. ~ 17. (생략)

6. -----

----- 같은
법 제30조제4항-----
--

7. ~ 17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·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것으로

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관련 비용추계는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첨부되어 있으므로

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(☎ 2133-6729)